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지향 의원입니다.
-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이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취지와는 다른 운영실태를 보이거나, 기본적인 기능마저 부실한 경우가 있어
-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실질적 복지를 증진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과 공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 운영되고 있는 노동자복지관이 건립취지 및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하도록,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하였고(제5조 제2항 신설), 복지시설의 사용자에게 사용료 및 이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제8조 개정) 감면규정을 정하여(제9조 신설), 이용자의 효율적인 복지증진이 가능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본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3.9.25. 이후 체결되는 노동자복지관의 위수탁협약부터 이를 적용하여,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개정안의 취지를 살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